고흥군의회 공고 제2023-23호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14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3. 7. 11. ~ 2023. 7. 16.(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조례 제2023- 호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 위령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재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여수·순천 10·19사건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 위령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재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여수·순천 10·19사건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